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박 상 수*

目 次

- I. 서론
- II. 자유와 책임
- III. 분배적 정의
- IV. 사회적 정의
- V. 결론

I. 서론

행동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행동의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질서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그것은 특히 인간의 행동의 결과가 때에 따라서는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자연 및 사회환경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더더욱 그런 책임 부여가 곤란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정도로 결론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과정을 중시해야 하느냐 결과만을 중시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갈림길이며, 이런 기본 입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개념이 옳은 개념인가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네 가지 개념을 검토하면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행동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의 자유를 가정할 때 행동에 대해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선 책임의 한계를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했다. 그 다음으로 분배적 정의로 알려진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분배적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음에 언급될 사회적 정의를 정의하고자 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의에서는 네 가지의 정의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각 개념의 문제점도 지적하여 보았다. 물론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는 공동체주의자의 정의와 페미니스트의 정의 등이 있으나 필자는 공산주의자, 공리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및 계약주의자의 정의에 한정하였다.

II. 자유와 책임

여기서는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경우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는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등을 검토한다.

1. 책임과 사회질서

자유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책임이다. 행동에 대한 자유가 부여되기 위해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Hayek, F. A., 1960)는 “자유와 책임은 분리 불가능하다..... 비록 그것[자유]이 개인에게 유일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노력의 결과가 무수히 많은 우연적 사건들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그런 환경에 그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강요한다”(p.71)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인지하거나 예견하는 여러 환경에도 의존하지만, 행동하는 개인이 전혀 인지 내지는 예견하지 못하는 무한히 많은 환경 요인에 의존한다. 즉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요인들, 그 중에서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결정요인들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행동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는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본시각은 책임의 부여가 행동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합리적

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시키고 또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우리는 개개인들의 상이한 심리를 완벽히 파악하고 통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다양한 개인의 심리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결과 이런 우리의 무능력에 대처하는 사회적 제도가 바로 행동하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개인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책임의 부여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강한 결정론

행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해서 윤리학과 형이상학에서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결정론 혹은 강한 결정론(hard determinism)은 사람들의 행동을 우연히 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인과의 법칙을 잘 모른다고 하여도 인과법칙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Taylor, P. W., 1975, pp.202-7)

결정론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원인과 그 인간을 둘러싼 선택조건이 주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그는 다른 대안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다른 대안을 수행할 능력과 또 만약 원했다면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대안의 행위 가운데서 단 한가지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에 결정론자는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또 선택의 순간에 환경이 그러했다면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다".(ibid., p.207)

우주의 모든 사건들은 인과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행위도 인과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충분조건이 주어지면 특정한 행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다른 어떤 행동도 결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만약 반드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행동을 유발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행동하는 사람의 주변환경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된다.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자의 행위에 대해선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 사회환경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

다는 것이다.

3. 온건한 결정론

그리고 결정론에서 파생된 온건한 결정론(soft determinism)은 결정론이 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그런 심사숙고에 의거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개인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에는 여러 대안이 있으며, 개개인은 최선의 대안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다. 즉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결정론이 옳으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유의지가 존재하며, 따라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건한 결정론은 세 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자발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다른 행동이 가능할 수 없는 선행 조건으로부터 생겨난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것은 결정되어 있다. 둘째로 자발적인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억압되거나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다. 셋째로 그런 장애나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 자신의 내부에서의 특정한 상태, 사건, 조건 등이다. 즉 행동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욕, 선택, 결심, 욕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 욕구, 의지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달리 행동하도록 방해받지 않는다면, 개개인은 자유롭고 그러므로 때때로 그가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Taylor, R., 1983, p.73) 결정론과는 달리 온건한 결정론은 행동하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아울러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책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겠다.

4. 자유지상주의

비결정론 중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인과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경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도덕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의무감 혹은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선택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일러(Taylor, P. W., 1975)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인격적 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그를 밀거나 당기든 최종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그의 도덕적 자아이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는 그릇된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는 인격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제력과 의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단지 도덕 행위자가 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의미할 뿐이다.....도덕행위자는 자기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도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된다.....인간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의식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도덕행위자로 여겨질 수 있고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pp.209-10)

즉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도덕행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하므로 인과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그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겠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이런 견해를 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는 사회에서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는 개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행동의 자유와 책임은 분리 불가능하다. 책임의 한계에 대해선 정확하게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책임의 부여가 핵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의 자유와 책임문제를 결론지으면서 온건한 결정론과 자유지상주의를 수용하면서 강한 결정론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검토해 보면 인과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면 결정론적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런 결정론적 견해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에 관심을 집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춘 도덕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결국 우리는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도덕행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아울러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회제도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5. 책임과 소득분배

행동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상당부분이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에 책임의 범위는 행동하는 개개인이 대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고려하리라고 생각되는 효과에 한정한다. 예컨대 도

독질을 할 자유는 있지만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질 때 도둑은 물건에 대한 변상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의 부여와 관련하여 제일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소득분배, 즉 개인에 대한 보수문제일 것이다. 개인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하는 개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무수히 많은 요인들 중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개인은 이런 무수히 많은 요인들 중 극히 적은 부분만을 극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자유사회에선 자신의 보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생산에 대한 기여는 시장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보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그 개인의 입장에선)에 의존한다. 즉 분배는 어쩌면 소위 행운과 불운, 환언하면 도박적인 요인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재산과 가정환경, 교육환경, 친구관계, 이성관계, 진로, 기회, 결혼과 배우자의 상속재산 등이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쩌면 가혹할지도 모른다.

Ⅲ. 분배적 정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분배가 어떤 경우에 도덕적으로 공정한지를 검토하길 좋아한다. 분배적 정의(distributed justice)는 정치적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문제와는 구별되는 소위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문제이며, 그리고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정의 문제를 평가하고자 하는 가치가 개재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정의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배적 정의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추적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분배적 정의는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된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지칭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된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서 중대한 문제는 차별대우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차별대우로서 수용 가능한 근거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이다. 즉 완전한 평등의 원리, 욕구의 원리, 자질과 업적의 원리, 기여(혹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의 원리, 노력(혹은 노동)의 원리 등이 있는데 처음의 두 원리는 평등주의적 원리이며, 나머지 세 가지 원리는 차등대우의 원리이다. 각각의 원리를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이하의 내용은 Feinberg, J., 1973, pp.178-94를 많이 참조하였다)

1. 완전한 평등의 원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며, 모두에게 어떤 절대적 인권들이 똑같이 부여된다. 인권은 비경제적 선(善)에 대한 적극적 권리, 비인간적으로 잔혹하게 대우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 인간적인 방식으로라도 착취당하거나 멸시 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등 그런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P에 대한 A의 몫}}{\text{P에 대한 B의 몫}} = \frac{\text{A의 Q 소유}}{\text{B의 Q 소유}}$$

여기서 P는 경제적 재화, Q는 인간성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인간성(Q)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경제적 부(P)도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이 정식은 비례적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경제적 재화도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존재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원리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런 권리에다 경제수입을 똑같이 분배받을 권리를 첨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권리를 첨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만 생산되는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 분배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도 증대할 수 있지만, 그런 욕구를 채우고도 남는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잉여의 배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 이런 잉여까지도 평등주의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있게 분배되려면 차등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롤즈(Rawls, J., 1958)는 "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작용할 것이라고 합

당하게 기대되지 않는 한, 불평등은 자의적이다”(p.220)라고 주장하면서 불평등한 분배를 합리화한다. 한편 하이에크(Hayek, F. A., 1960)도 “빠른 경제적 진보는 대체로 이런 불평등의 결과이며, 또 그런 불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p.42)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이 처음에 부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치재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런 사치재가 일반인에게도 이용 가능하게 되는 생활필수품이 된다고 주장한다.(pp.43-44)

두 사람의 주장은 불평등한 분배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런 불평등한 분배는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평등주의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이들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고 더욱이 문명의 진보가 사실상 더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욕구의 원리

욕구의 원리는 독자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완전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데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할뿐이다. 욕구의 원리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기본 욕구가 존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상이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평등주의적 항목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평등의 원리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갑은 총각이고 을은 처자식을 가진 가장일 경우, 완전한 평등의 원리에 따라 두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이 분배된다면 갑의 이익을 더 후하게 보장한다. 또 다른 사례로 각각 50kg과 100kg인 두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음식물을 배분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일 것이다. 체중이 많은 사람은 체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다소 많은 양의 음식물이 배분되어야 공평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어디까지로 구분하여야 하는가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경제가 대단히 발달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단지 없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을 기본적 욕구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음식물, 옷, 주택 등과 같이 의식주에 관련된 욕구만을 기본적인 욕구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커짐에 따라 보다 풍요로워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도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 물론 의식주에 관련된 욕구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자녀들의 양육, 기본적인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 포함된다.

결국 욕구의 원리에 따르는 기본적인 욕구는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기본적인 욕구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의 여론에 의해서 혹은 사회 공동

체가 합의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질과 업적의 원리

이하에서 검토되는 세 가지 원리는 불평등주의 항목에 속하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따라 재화를 분배한다. 그런데 각각의 원리는 자격에 대해 각각 상이한 개념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우선 자질의 원리는 성취해낸 어떤 일보다 그가 어떤 종류의 인물인가, 즉 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재화를 배분한다. 자질과 관련되는 특성은 기술(skills)과 덕성(virtue)이다.

기술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있다.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결국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술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야만 합당하다고 하겠다. 즉 자격의 진정한 요건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습득한 기술만이 진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술도 사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얻은 유전적 성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사람이 동일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두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기술도 사실은 선천적 기술과 혼합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 자체보다는 노력이 진정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후천적인 기술과 선천적인 기술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 습득에 얼마나 노력하였느냐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자질의 원리의 둘째 특성인 인격적 덕성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실 덕성을 지닌 것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것은 덕성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가 보다 덕성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만 덕성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덕성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금전적인 동기에 의해서 덕성이 형성될 수 있다. 덕성은 다른 동기에서 기원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동기에서 덕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도덕 자체를 퇴행시켜버린다.

다음으로 업적(merit)의 원리(이하의 원리는 대부분 업적주의적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서 보수의 기준을 찾는다. 예컨대 학문.

예술, 철학, 음악 등에서 뚜렷한 업적을 쌓았을 때 평균 이상의 보수를 분배한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사회의 평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공헌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학문이나 예술 혹은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시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업적주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대한 공헌이 상당수의 경우에 선천적인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데 특히 스포츠나 예술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학문이나 예술 혹은 스포츠에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이 이런 능력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따라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도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4. 기여의 원리

업적을 기여(contribution)로 간주하는 경우, 분배적 정의는 기여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 등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그들에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여의 원리는 사회주의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는 자신들이 생산한 것 중 극히 일부만을 얻는 데에 반해 자본가들은 그들의 기여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획득한다. 소위 자본가착취를 설명함에 있어서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부를 창출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측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노동의 생산물을 분배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이 원리는 자율적인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공산주의 공동체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여의 원리는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교환적 정의는 특히 등가교환(exchange of equal values)을 강조하는데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요소소득은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때의 요소소득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정가격(just price)이어야 한다. 만약 공정가격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등가교환이며 그런 계약은 무효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만약 계약이 교섭력의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불평등이 약자의 긴급한 욕구에 기인하든 혹은 독자적인 충고를 얻는 데에 있어서 그의 무

지나 약점 혹은 무능력에 기인하든, 그 계약은 무효화가 가능하다”(MacPherson, C. B., 1987, p.20)는 이런 원리를 등가교환의 교환원리라고 부른다.

이런 교환적 정의는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모험과 창의적인 발명과 발상이 바로 부의 창출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 자본가에게 막대한 부가 분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노동자의 임금을 설명하는 원리로서 이런 기여의 관점을 두드러지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한 노동자의 기여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기술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고, 사회제도의 도움도 대단히 클 것이며, 다른 기업들과 다른 노동자의 도움도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천적인 문제로 기여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없다는 데에도 난제를 안고 있다.

5. 노력(혹은 노동)의 원리

노력의 원리는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가해진 노력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노력의 원리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는 열심히 일하는 간부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보수를 받고, 반면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적은 몫을 분배받을 것을 요구한다.

마르크스(Marx, K., 1875)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초기공산주의 단계, 즉 사회주의 단계에서 “개별생산자는 사회에 제공한 것(노동량)만큼을 정확히 되돌려 받는다(the individual producer receives back from society exactly what he gives to it)”(p.5)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것만큼에 해당되는 소득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노력의 원리는 개개인이 생산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노동량을 제공했느냐에 따라 소득을 결정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면, 즉 많은 시간을 노동하면, 그만큼 많은 소득이 분배될 것이다. 반면에 적게 노력했다면 적은 양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노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력의 원리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원리이다.

노력의 원리에서도 공정한 기회요구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어떤 불리한 조건을 계승하거나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시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IV. 사회적 정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이런 요구들간에 모종의 균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소위 공평(fairness), 공정(equity), 동등(equality)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의의 기본원리는,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고 상이한 경우는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부담이나 혜택의 분배, 일반적인 법규의 제정과 집행, 경쟁적인 활동에서의 자발적인 협조 등은 각자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차별대우를 하고자 한다면 차별대우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두 학생이 같은 규칙을 어겼으나 한 학생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8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방차, 구급차, 순찰차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소방차, 구급차 및 순찰차에 대해선 차별대우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정의(injustice)가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경제적 수입의 차이이다. 사람에 따라 상이한 소득이 지급된다고 하였을 때 이런 소득의 격차는 정당한 차별대우의 근거에 입각에서 나타난다. 이 문제는 분배적 정의에서 검토되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대체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상적 견해에 따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자의 정의, 계약주의자의 정의, 공산주의자의 정의, 공리주의자의 정의가 그것들이다.

1. 자유지상주의자의 정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개개인의 평화적이면서 질서 정연한 자발적인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권"(Sterba, J. P., 1998, p.189)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리고 정부의 유일한 도덕적 목적은 개인들의 여러 가지 권리, 그 중에서도 생명권, 자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연권의 개념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고전적인 로크의 자연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우선 생명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칭한다. 물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재산권은 극단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들에게는 신성불가침의 권리 수준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런 권리는 어떤 재화나 자원을 상속에 의해서 혹은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서 획득했다면 그런 재화나 자원을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소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권을 궁극적인 정치적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자유를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 속박받지 않는 상태”(Sterba, J. P., 1998, p.190)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표자인 노직(Nozick, R., 1973)은 소유에 관한 정의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한 사람이 획득과 이전에 관한 정의원리에 의해서 혹은 (처음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상세화된 것처럼) 부정의의 교정원리에 의해서 소유권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유권은 정당하다. 만약 각자의 소유가 정당하다면 그때 소유권의 전체 분배도 정당하다”.(p.49)

따라서 여태까지 소유되지 않던 어떤 사물들이 정당하게 획득되거나 혹은 자발적인 교환이나 선물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면, 그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재분배가 개인적인 동기나 자선적인 동기에서 유도되지 않는다면 재분배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강제 혹은 속박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위 개개인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회나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수준을 넘어서면 공공의 행위는 사적인 생명과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도 거의 불필요하게 된다. 이때의 정부 규모는 야경국가 정도의 작은 정부이면 족하다고 보겠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정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모두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선 복지 추구권 같은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에 대해선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애로우(Arrow, K. J., 1978)는 특정한 사람이 대단히 유능하여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부모, 교육적 환경, 사회 등이 그런 능력의 형성에 조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본원적으로 취득했다고 해도 그런 취득은 사실 선조의 지혜, 다른 생산자의 도움(예컨대 자본재 혹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제도의 도움 등에 의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환언하면 사유재산은 자신의 기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의 분배적 정의 중 기여의 원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순수한 기여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사회제도의 기여만큼 사유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조세로 납부해 한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연권 중 생명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명권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을 권리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득재분배정책 반대와 무제한적인 경쟁은 궁극적으로 능력이 없는 빈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소위 빈곤을 방지하는 것은 곧 죽음을 방지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며, 죽음의 방치는 곧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곧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빈곤에 대한 대처가 없다는 것은 곧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일종의 인권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주의자의 정의

대표적인 계약주의자는 롤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대체적으로 동등한 정치적 자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경제재가 최약자에게 최대한 많이 분배되는 원리를 정의라고 정의한다. 소위 최약자에게 최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원리(maximin principle)가 적용된다면 개개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최약자에게 최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원리가 채택되는 이유는 그런 정의의 원리가 최초의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최대의 최소치를 확보하는 것이다.(Sterba, J. P., 1998, p.198) 즉 가장 적은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사회와 계약을 한다면 자신이 가장 최

악의 상태에 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회에서 반드시 상위계층에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사회의 평균 수준의 이득을 보장받으리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주의자들은, 최약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준다는 전제에서, 소위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전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자유와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경우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공정하다고 본다. 최약자에 대해서 최대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 즉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계약주의자들의 견해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헌법적 경제학을 주창하는 뷰케닌(Buchanan, J. M., 1983)에 따르면, 공정한 헌법적 규칙들(fair constitutional rules)은 헌법적 배경에서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개인은 자신의 주위의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불편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뷰케닌의 견해를 인용해 보면, "공정한 게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계약론자의 반응은 놀랄 것도 없이 다시 동의(agreement)로 복귀한다. '공정한 규칙'은, 게임하는 사람의 특별한 위치가 확인되기 이전에, 게임에 앞서서 게임하는 사람들에 의해 동의되는 규칙이다. 이런 정의(定義)가 언급하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라: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규칙에 동의한다면 그 규칙은 공정하다. 그것은 규칙이 공정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공정은 동의에 의해 정의된다. 동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공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p.56)

롤즈나 뷰케닌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칙의 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규칙의 공정성은 결과적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을 때 획득된다고 볼 수 있다.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개인은 알지 못하므로, 즉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규칙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규칙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규칙에 동의하게 된다. 이런 규칙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뷰케닌은 정부 행위를 통한 재분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런 견해를 피력한다. 그 이유는 선거구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인들을 완전히 불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재분배에 관련된 규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뷰케닌(1983)은 "통상적인 정치적 장치에 대한 불신은, 적어도 상당한 정도까지, 통상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순수한 헌법적 규칙에 의지할 것을 제안한다"(p.83)

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소득분배를 시정하려는 정치인들의 의도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재분배규칙은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해져야만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계약주의자의 정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로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다. 정말로 공정한 규칙이 되려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정말로 불편 부당한 위치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오직 그럴 경우에만 새로운 규칙은 정말로 공정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시키고자 할 때 그들은 원초적 상태에 있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부존자원은 상이하며, 그리고 미래의 상태는 각자가 가진 부존자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한 집단들은 그런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 결과 제정 혹은 개정된 규칙은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취약자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대단히 애매 모호하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문제 대해선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기본 욕구는 구체적으로 생존과 건강에 국한되는 욕구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를 포함하는가? 만약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적인 문화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활동을 의미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Hayek, F. A., 1960, pp.285-305)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론에 백지 위임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의 정의

사회주의자들은 동등(equality)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고 자본재가 공유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마르크스(Marx, K., 1875)는 "개별 생산자가 사회로부터 돌려 받는 것은 정확히 그가 사회에 제공한 것이다. 그가 사회에 제공한 것은 그의 개별적인 노동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주의 사회(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보수는 노력한 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면 마르크스(Marx, K., 1875)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 대해 최선의 기여를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보수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그 결과 분배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Sterba, J. P., 1998, p.193)

이런 사회는 자본주의와 초기 공산주의(즉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생산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사회이고,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아마도 완벽하게 지배할 정도로 발전한 사회일 것이며, 그리고 개개인은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아마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며, 특히 빈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로선 현실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4. 공리주의자의 정의

공리주의자들은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그 행동들은 옳다고 생각하며, 반면에 그 행동들이 행복을 감소시킨다면 그 행동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벤담과 J. S. 밀의 견해에서 유래하며, 행동공리주의의 내용을 함축한다. 벤담의 말처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대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선 아직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효용의 가측성과 사람들간 효용의 비교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그리고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을 일치시키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개인간 효용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각자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치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극대화된다.

물론 개인간 효용의 비교 가능성은 사실상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보다 완화된 가정 하에서 러너(Lerner, A. P., 1944)는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상이하며 그리고 효용함수의 평가에 관한 정보가 전적으로 사적인 일이라고 가정한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보다 큰 소득의 한계효용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득의 동일화가 사회 전체의 총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의 한계효용을 갖느냐에 따라, 동일한 소득분배로부터의 이탈은 총효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런 효용 감소와 효용 증가는 동일한 확률이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가 완전히 동일할 때 총후생도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 위치에 대한 무지를 가정한다면, 합리적인 개개인들이 동의하는 원리는 아마도 결과론적인 원리일 것이다. 즉 동일한 불확실한 전망을 기대한다면, 예컨대 자신이 보유하는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재능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위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동일하게 나누는 그런 상태를 선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평등주의적인 소득분배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앞에서 언급한 분배적 정의에서 평등주의적 분배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이 분배되도록 한다는 것은 평등주의적 분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이나 부를 공평하게 즉 동일한 크기로 분배한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인간의 기본 욕구의 충족을 인권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면 그런 분배가 타당할 수는 있다.

기본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득을 나누는 것은 결과만을 가지고 형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만약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공리주의적 이상도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공리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최종적인 사회도 공산주의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와 일맥 상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공리주의 사상을 종국적으로 전체주의 사상 혹은 사회주의 사상과 동일시한다.

특히 현실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를 합리화하게 된다. 또한 소득이나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도 부정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방식에 의하든 획득된 소득에 대해선 균등한 소득이 되도록 재분배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책임의 부과로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개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즉 행동하는 개개인에

게 책임을 부과하기에 다소 곤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법, 정치, 관습, 종교, 교육제도 등과 관련해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감안하면서 사회적 정의에 관한 네 가지 정의를 평가해보자. 우선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인류가 추구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자의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서 언급된 평등주의적 분배와 일맥 상통하는데, 기본 욕구와 관련해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이 분배되도록 한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현실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를 합리화하게 된다. 또한 소득이나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도 부정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방식에 의하든 획득된 소득에 대해선 균등한 소득이 되도록 재분배할 것이다. 이런 사고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규칙이 적용될 경우 나타나는 어떤 소득분배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 가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소득이 전부 자신의 기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로 재산권에 대한 자연권은 주장하면서도 생명권에 대해선 소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정말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계약주의자들의 정의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유주의자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의 개념이지만,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정한 게임규칙의 제정과 개정에서 당사자들이 불편 부당한 위치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며, 또한 기본 욕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도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론에 백지 위임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에는 자유지상주의와 계약주의자들의 견해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기본 욕구에 대한 무시가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rrow. K. J.(1978). "Nozick'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Philosophia*. 7. June. pp. 265-79.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433-47
- Buchanan. J. M.(1983). "Fairness, Hope, and Justice". in *New Directions in Economic Justice*(ed. by Skurski. 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53-89.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279-315.
-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Feinberg. J.(1973). *Social Philosophy* (문창옥 역: 『사회철학』, 종로서적, 1992). Prentice- Hall.
- Frankena. W. K.(1973).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종로서적, 1985), 2nd ed., Prentice-Hall.
- Harsanyi. J. C.(1955). "Cardinal Welfare, Individualistic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LXIII. pp.309-21.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141-53.
- Hausman. D. M. and McPherson. M. S.(1993). "Taking Ethics Seriously: Economics and Contemporary Moral Philosoph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I(2), pp. 671-731.
- (199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 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7). Routledge & Kegan Paul.
- Lerner. A. P.(1944). "The Optimum Division of Income". in A. P. Lerner(ed.). *The Economics of Control: Principles of Welfare Economics*. Chapter 3. Macmillan. pp.23-40.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123-140.
- MacPherson. C. B.(1987).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in MacPherson. C. B.(ed.).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and Other Essays*. Oxford

- University Press, pp.1-20.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3-22.
- Marx, K.(1875),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http://www.marxists.org/>
- Nozick, R.(1973),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3(1), Fall, pp.45-126.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351-432.
- Rawls, J.(1958), "Justice as Fairness", *Philosophical Review*, LXVII, pp.164-94.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219-49.
- (1971),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d, A. H.(1984),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Wheatsheaf Books.
- (1990), *Free Market Morality*(이상호 역: 『자유시장의 도덕성』, 문예출판사, 1996), Routledge.
- Sterba, J. P.(1998), "Social Justice" in *Economics, Ethics, and Public Policy*(ed. by C. K. Wilb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pp.187-215.
- Taylor, P. W.(1975), *Principles of Ethics* (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90),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 Taylor, R.(1967), "Determinism,"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P. Edwards, ed.), vol.2, MacMillan, pp.359-73.
- (1983), *Metaphysics*(엄정식 역 : 『형이상학』, 1988, 종로서적), 3rd ed., Prentice-Hall, Inc..